의안번호	제 27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병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4년 9월 5일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

발의연월일 : 2014년 9월 5일

발 의 자 : 박병진, 임순묵, 강현삼,

김봉회, 이광진, 임헌경,

김양희

1. 개정이유

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 삭제(안 제12조)

- 개인,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조례의 규제 삭제
- 나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(안 제2조, 제9조부터 제10조, 제12조부터 제13조, 제15조부터 제16조, 제19조부터 제20조)
- 3. 조례안 : 붙임
- 4. 신・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7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
- 8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"를 "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장애자용"을 "장애인용"으로 한다.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5조제2항 및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령""을 "법 제5조제3항 및「자전거이용 활성화어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6조"를 "제6조"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"자에 대하여"를 "자에게는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상시"를 "항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대하여"를 "대해서"로 한다.

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통학하는 때"를 "통학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소요되는"을 "필요한"으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 제19조제1항 중 "법22조"를 "법 제22조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	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
관한 조례	관한 조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자전거 이용시설"이란 자전	1
거도로, 자전거주차장, <u>기타</u>	그 밖에
자전거(원동기를 장치한 것	
및 <u>장애자용</u> 의자차를 제외한	<u> 장애인용</u>
다)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	
로서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	
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	
다)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	
한다.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생	제6조(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	2
는 법 제5조제2항 및「자전거이	- 법 제5조제3항 및「자전거이
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	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
<u>령」(이하"령"</u> 이라 한다) 제4	<u> 령」(이하"영"</u>
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	
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 도
로를 개설・확장・재정비하거
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의 신
도시, 관광단지 개발, 재건축ㆍ
재개발,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
개선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한
사업시행자는 <u>법 제6조</u> 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
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
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.
1 ~ / (새 랴)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자전 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<u>자에 대하여</u>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・관리) 지
 - ① · ② (생 략)
 -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 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·관리하여야

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
<u>제6조</u>
· 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자에게는</u>
,
제10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・관리)
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
③
항상

하다. ④ 시장·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 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·---- 대해서----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 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 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 • ② 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·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<삭 제>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 •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 ·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제13조(자전거대여소 설치) 제13조(자전거대여소 설치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개인 ·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·수 리센터 ·대여소를 설치 · 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 ----- 범위----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제15조(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| 제15조(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· 운영) 및 시범기관의 지정・운영) ① (생 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제1항 (2) -----

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<u>통학하는 때</u>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16조(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개인·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·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19조(자전거의 등록) ① 시장· 군수는 <u>법22조</u>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② (생 략)
- 제20조(권한의 위탁)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<u>의한</u>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(생 략)

<u>통학하는 경우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
설치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필요한
범위
제19조(자전거의 등록) ①
<u>법 제22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권한의 위탁) ①
<u>따른</u>
② (현행과 같음)

참고자료

1. 각 시·도별 자전거 주차요금 징수 조항 현황

W- V-		주차요금 징수 조항				
번호	시·도	여	부	비 고		
1	서울특별시			- 시 조례 없음(구청별 조례 제정)		
2	부산광역시	0		- 무료		
3	대구광역시	0		- 무료		
4	광주광역시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징수 할 수 있음		
5	대전광역시	0		- 무료 -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		
6	울산광역시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		
7	세종시	0		- 무료		
8	경기도	0		- 필요시 규칙으로 징수할 수 있음		
9	강원도	0		- 무료		
10	충청북도	0		- 무료 -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시·군 조례로 정하여 징수		
11	충청남도	0		- 무료		
12	전라북도		0			
13	전라남도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		
14	경상북도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		
15	경상남도		0			
16	제주도	0		- 무료		

2. 각 시·군별 자전거 및 주차요금 징수 조항 현황

번호	시·도	주차장 현황 (개 소)	주차요금 징수 조항		ul
			여	부	비 고
1	청주시	510	0		- 무료
2	충주시	442	0		- 무료
3	제천시	54	0		- 무료
4	보은군	7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5	옥천군	32	0		- 무료 -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음
6	영동군	106			- 조례 없음
7	중평군	36	0		- 무료
8	진천군	17			- 조례 없음
9	괴산군	31	0		- 무료
10	음성군	13			- 조례 없음
11	단양군	14			- 조례 없음